

근로계약서 (요양보호사)

□ 갱신 □ 신규

사용자	상 호	엘스 방문요양센터		대 표 자	안 청 현
	주 소	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3, 501호			연락처 02) 422-3935
근로자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	핸드폰번호

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- 아 래 -

근로장소	요양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	업무내용	□ 방문요양 □ 방문목욕 □ 가족요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약기간	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6 년 월 일 부터 2026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 ※ 단, 각 요양 대상자의 사망, 입소, 등급외, 요양 대상자 및 보호자의 교체 요구로 인해 요양 과업이 마무리 되는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(계약만료)로 하며, 쌍방의 합의하에 갱신 가능하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형태 근로일/휴일	1. 근로 일 : 근로자의 근무일은 월요일 ~ 토요일 (주 40시간 이하)로 하며, 단 수급자의 사정 및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. ※ 다만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 2 조 각호(제1호는 제외)에 따른 공휴일 및 동법 제 3 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. 2. 휴 일 :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의 기준을 따른다. 4주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. ※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하되,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(제18조)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시간 휴게시간	1. 근로시간 :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 특성상 근무시간은 수급자 계약 시간에 따라 매월 제공되는 근무 현황 일정표(요양보호사)의 시간을 적용한다. 단, 월 중 수급자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변경될 시는 변경된 시간을 적용한다. 2. 휴게시간 :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, 8시간 근무시 6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3. 연장,야간근로 :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(또는 동의)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근로와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. 4.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4조(휴게) 및 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)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이와같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. (근로자) 성 명 : (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금	1. 임금의 구성항목 (시급제_시간당) [국민연금□ 건강보험□ 고용보험□ 산재보험□]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방문요양</th><th>방문목욕</th><th>가족요양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5">임금 구성</td><td>기 본 급</td><td>10,530원</td><td>15,000원</td><td>18,000원</td><td rowspan="5">시간당</td></tr><tr><td>주휴수당</td><td>2,206원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tr><td>연차수당</td><td>764원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tr><td>기타수당</td><td>353원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tr><td>가족수당</td><td>-</td><td>-</td><td>원</td></tr><tr><td>총시급</td><td>13,500원</td><td>15,000원</td><td>18,000원</td><td></td></tr></table> 1) 주휴수당 : 근로기준법 제18조(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)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(휴일)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. 2) 연차수당 :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는 근로자 요청 시 휴가로 부여하며, 해당 연차일에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(수당산출근거 : (9,620원*(8*15/12/174)) 2. 근로시간의 계산: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수급자의 계약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부터 업무종료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본다. 3. 지급방법: 임금은 당월 0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20 일에 전액을 '근로자'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. 4. 급여정산 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(연금,건강,노인장기요양,고용)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제반 보험료 및 세금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. 5. 퇴직금: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에 의한다. [퇴직연금 □ 퇴직적립금 □] 6. 위 임금금액은 본 계약기간 내에만 유효한 것이며, 차 년도 계약 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7. 임금명세서는 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)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한다.					구분	방문요양	방문목욕	가족요양	비고	임금 구성	기 본 급	10,530원	15,000원	18,000원	시간당	주휴수당	2,206원	-	-	연차수당	764원	-	-	기타수당	353원	-	-	가족수당	-	-	원	총시급	13,500원	15,000원	18,000원	
구분	방문요양	방문목욕	가족요양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금 구성	기 본 급	10,530원	15,000원	18,000원	시간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휴수당	2,206원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차수당	764원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타수당	353원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가족수당	-	-	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시급	13,500원	15,000원	18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근로계약서 (요양보호사)

□ 갱신 □ 신규

사용자	상 호	엘스 방문요양센터		대 표 자	안 청 현
	주 소	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3, 501호			연락처 02) 422-3935
근로자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	핸드폰번호

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- 아 래 -

근로장소	요양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	업무내용	☐ 방문요양 ☐ 방문목욕 ☐ 가족요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약기간	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6년 월 일 부터 2026년 월 일 까지로 한다. ※ 단, 각 요양 대상자의 사망, 입소, 등급외, 요양 대상자 및 보호자의 교체 요구로 인해 요양 과업이 마무리 되는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(계약만료)로 하며, 쌍방의 합의하에 갱신 가능하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형태 근로일/휴일	1. 근로 일 : 근로자의 근무일은 월요일 ~ 토요일 (주 40시간 이하)로 하며, 단 수급자의 사정 및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. ※ 다만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 2 조 각호(제1호는 제외)에 따른 공휴일 및 동법 제 3 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. 2. 휴 일 :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의 기준을 따른다.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. ※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하되,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(제18조)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시간 휴게시간	1. 근로시간 :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 특성상 근무시간은 수급자 계약 시간에 따라 매월 제공되는 근무 현황 일정표(요양보호사)의 시간을 적용한다. 단, 월 중 수급자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변경될 시는 변경된 시간을 적용한다. 2. 휴게시간 :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, 8시간 근무시 6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3. 연장,야간근로 :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(또는 동의)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근로와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. 4.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4조(휴게) 및 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)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이와같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. (근로 자) 성 명 : (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금	1. 임금의 구성항목 (시급제_시간당) [국민연금 ☐ 건강보험 ☐ 고용보험 ☐ 산재보험 ☐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방문요양</th><th>방문목욕</th><th>가족요양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5">임금 구성</td><td>기 본 급</td><td>10,530원</td><td>15,000원</td><td>18,000원</td><td rowspan="5">시간당</td></tr><tr><td>주휴수당</td><td>2,206원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tr><td>연차수당</td><td>764원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tr><td>기타수당</td><td>353원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tr><td>가족수당</td><td>-</td><td>-</td><td>원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총시급</td><td>13,500원</td><td>15,000원</td><td>18,000원</td><td></td></tr></table> 1) 주휴수당 : 근로기준법 제18조(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)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(휴일)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. 2) 연차수당 :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는 근로자 요청 시 휴가로 부여하며, 해당 연차일에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(수당산출근거 : (9,620원*(8*15/12/174))					구분		방문요양	방문목욕	가족요양	비고	임금 구성	기 본 급	10,530원	15,000원	18,000원	시간당	주휴수당	2,206원	-	-	연차수당	764원	-	-	기타수당	353원	-	-	가족수당	-	-	원	총시급		13,500원	15,000원	18,000원
구분		방문요양	방문목욕	가족요양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금 구성	기 본 급	10,530원	15,000원	18,000원	시간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휴수당	2,206원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차수당	764원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타수당	353원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가족수당	-	-	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시급		13,500원	15,000원	18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근로시간의 계산: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수급자의 계약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부터 업무종료 시간 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본다. 3. 지급방법: 임금은 당월 0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20 일에 전액을 '근로자'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. 4. 급여정산 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(연금,건강,노인장기요양,고용)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제반 보험료 및 세금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. 5. 퇴직금: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에 의한다. [퇴직연금 ☐ 퇴직적립금 ☐] 6. 위 임금금액은 본 계약기간 내에만 유효한 것이며, 차 년도 계약 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7. 임금명세서는 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)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